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송언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78

발의연월일: 2020. 6. 23.

발 의 자:송언석・구자근・김정재

김영식 · 김석기 · 권명호

유두현 • 정희용 • 박덕흠

정점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18년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%에서 25%로 상향한 바 있음. 그 결과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38개 기업의 법인세 부담 규모는 42.5% 늘어났음. 같은 시기 미국은 법인세율을 35%에서 21%로 낮췄고, 캐나다와독일은 15%, 영국 19%, 일본 23.3% 등 우리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.

OECD 소속 35개국 중 27개 나라에서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우리는 법인세 인상과정에서 과표구간을 4개로 설정하여 세계적인 추 세를 역행하고 있음.

이에 현행 4개로 나뉘어 있는 과세표준 구간을 10억원 이하와 10억원 초과 2개 구간으로 단순화하고, 각각 9%와 20%의 세율을 적용하고자 함(안 제55조제1항). 아울러 부정확한 용어로 지적받아온 '외국납부세액공제'를 '국외기납부세액공제'로 수정하고(안 제57조 및 제57조

의2), 과세표준신고 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려(안 제60조 및 제7 5조) 경제주체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.

법률 제 호
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5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과세표준	세율
10억원 이하	과세표준의 100분의 9
10억원 초과	9천만원 + (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)

제57조의 제목 중 "외국 납부 세액공제"를 "국외기납부세액공제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"외국납부세액의"를 각각 "국외기납부세액의"로 한다.

제57조의2의 제목 중 "외국납부세액공제"를 "국외기납부세액공제"로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외국 납부세액"을 "국외기납부세액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외국 납부세액이"를 "국외기납부세액이"로 한다.

제60조제1항 중 "3개월"을 "4개월"로, "4개월로"를 "5개월로"로 한다. 제75조제1항 중 "4개월"을 "5개월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세율 및 과세표준 등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) 제55조제1항·제 60조제1항 및 제7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기	러 정	안
제55조(세율) ① 내국법인의 각	제55조(세율	() (1) -	
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			
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			
에 다음 표의 세율을 적용하여			
계산한 금액(제55조의2에 따른			
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			
세액 및 「조세특례제한법」			
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·상생			
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			
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이			
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			
다. 이하 "산출세액"이라 한다)			
을 그 세액으로 한다.			
과세표준 세율	과세표준		세율
이상 성 기 뒤	1 4 4 4 5 1 4 1 4 1 4 1	-1 vi) -	て フ ム コムハト

<u>과세표순</u>	<u>세율</u>
<u>2억원 이하</u>	과세표준의 100분의 10
2억원 초과	<u> 2천만원 + (2억원을</u>
200억원 이하	초과하는 금액의_
200 12 14	<u>100분의 20)</u>
2006]6] 7 =	39억8천만원 +
200억원 초과	(200억원을 초과하는
3천억원 이하	금액의 100분의 22)
	655억8천만원 +
3천억원 초과	(3천억원을 초과하는
	<u>금액의 100분의 25)</u>

과세표준	<u>세율</u>	
<u>10억원 이하</u>	과세표준의 100분의 9	
	9천만원 + (10억원을	
10억원 초과	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	
	<u>20)</u>	
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57조(<u>외국 납부 세액공제</u> 등)	제57조(<u>국외기납부세액공제</u> 등)
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	①
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	
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	
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	
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	
국법인세액(이하 이 조에서	
"외국법인세액"이라 한다)을 납	
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	
경우에는 제21조제1호에도 불	
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	
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	
수 있다.	
1. <u>외국납부세액의</u> 세액공제방	1. 국외기납부세액의
법: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	
(이하 이 조에서 "공제한도금	
액"이라 한다) 내에서 외국법	
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	
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	
2. <u>외국납부세액의</u> 손금산입방	2. 국외기납부세액의
법: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	
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	
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	
에 산입하는 방법	
② ~ ⑦ (생 략)	② ~ ⑦ (현행과 같음)

제57조의2(간접투자회사 등의 외 저 국납부세액공제 및 환급 특례) ①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투자회사, 투자목적회사, 투자유한회사, 투자합자회사(같은 법 제9조제 19항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 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), 투 자유한책임회사 및 「부동산투 자회사법」에 따른 기업구조조 정 부동산투자회사,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(이하 이 조에 서 "가접투자회사등"이라 한다) 가 국외의 자산에 투자하여 얻 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 법인세액(제57조제1항 및 제6 항의 외국법인세액을 말한다) 이 있는 경우에는 제5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이 발생한 사 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그 사업연도의 외국 납부세액(국 외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 에 대하여 「소득세법」 제129 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한도로

제57조의2(간접투자회사 등의	<u>국</u>
외기납부세액공제 및 환급	특
례) ①	
국외기납-	부세
<u> </u>	

하고,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)을 빼고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간접투자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그 사업연도의 <u>외국 납부</u> 세액이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 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.

③ ~ ⑤ (생 략)

제60조(과세표준 등의 신고)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(제6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로 한다)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② ~ ⑨ (생 략)

제75조(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) ① 제60조의2제1 항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대상

②
국외기납

,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제60조(과세표준 등의 신고) ① -
<u>4개월</u>
5개월로
<u> </u>
,
② ~ ⑨ (현행과 같음)
제75조(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
성실 가산세) ①

인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 터 4개월 이내에 성실신고확인 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 산출세액(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「조세특례제한 법」 제100조의32에 따른 투 자·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 세액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,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 의 규정에서 같다)의 100분의 5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(생 략)

5개월
② (현행과 같음)